



MINI Market Report

국가	미국
제품	산양삼

주관사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CONTENTS

I. 미국 시장 정보	1
1. 삼(蔘)류 수입추이	1
2. 삼(蔘)류 소비 트렌드	2
2. 삼(蔘)류 유통동향	4
II. 미국 통관 정보	6
1. 관세 및 기타 세금	6
2. 식품 통관 시 유의사항	7
3. 통관절차	8
4. 통관 증빙서류	10
5. 통관 거부사례	12
III. 미국 검역 정보	14
IV. 미국 라벨링 정보	17

※ 참고자료

※ 조사 개요 및 일정 ※

1. 조사 개요

- 조사 국가 : 미국
- 조사제품 : 산양산삼
- 조사 항목
 - 시장동향 : 소비동향
 - 통관정보 : 관세현황, 통관절차, 통관서류(증빙서류)
 - 검역제도 : 검역절차, 검역장소(미국 or 한국)
 - 라벨링 및 식품첨가물 : 산양산삼 원물 관련 규정 및 관련 정책

2. 조사 일정

STEP	내용	완료일
조사 신청	- 미니조사 신청서 접수	8월 25일
조사 착수	- 조사국가/제품/항목 확인, 조사 담당자 배정	8월 26일
1차 정보수집	- 미국 시장/통관/검역/라벨링 국내외 정보 수집	9월 12일
중간 보고서 작성	- 1차 정보수집 정리 및 중간보고서 작성	9월 16일
2차 정보 수집	- 시장/통관/검역/라벨링 관련 정보 보강	9월 17일
최종 보고서 작성	- 완료 보고서 작성 및 송부	9월 19일

3. 조사 comment

- ◇ 통관서류 관련 : 미국 식약처와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통관 서류를 담당하며 자동화 시스템상에 요구되는 정보들을 기입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
- ◇ 검역장소 관련 : 한국의 경우(수출검역), 검사인력 가동이 가능하고 검사장소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수출자가 원하는 일시/장소에서 검사 실시. 미국의 경우(수입검역), 미국식약처가 샘플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공지를 내릴 시에 시행되며 본사나 관할지역의 검사실험실로 보내 처리됨(관련 자료 첨부하오니 참고 요망)
- ◇ 산양산삼 원물 관련 규정 및 관련 정책 관련 :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되고 판매, 유통되는 화기삼에 대한 규정은 엄격하지만 해외에서 원물로 수입하는 경우 마땅히 관련 정책이 없는 것으로 확인

미국 시장 정보

1. 삼(蔘)류 수입추이

- 산양삼은 식품 카테고리에서 「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 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함)」으로 분류되며 「1211.20.00」의 HS CODE를 가진 인삼근 밑에 포함되어 「1211.20.0020」 또는 「1211.20.0040」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화기삼은 홍콩, 대만 등에서 미국산 삼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 또는 성조기를 나타내는 말에서 유래됨

< HS CODE >

1211.20.00	인삼근 (Ginseng roots)
1211.20.0020	배양된 것 (Cultivated)
1211.20.0040	야생인 것 (Wild)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HS CODE 「1211.20」에 대한 미국의 수입 추이

< 미국 인삼류 식품 수입추이 >

Commodity: 121120, Ginseng Roots, Fresh Or Dried, Whether Or Not Cut, Crushed Or Powdered								
	Partner Country	United States Dollars			%Share			% Change 2013/2012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World	21,704,216	32,952,659	31,917,641	100.00	100.00	100.00	-3.14
1	China	9,344,489	20,004,790	20,686,852	43.05	60.71	64.81	3.41
2	Hong Kong	6,246,361	5,148,297	6,075,291	28.78	15.62	19.03	18.01
3	Canada	2,450,066	4,231,243	3,741,404	11.29	12.84	11.72	-11.58
4	Korea South	1,093,820	1,799,923	1,333,642	5.04	5.46	4.18	-25.91
5	Germany	9,310	38,100	66,175	0.04	0.12	0.21	73.69
6	Taiwan	2,546,720	1,725,186	9,608	11.73	5.24	0.03	-99.44
7	India	3,350	0	4,669	0.02	0.00	0.01	0.00
8	Italy	0	2,730	0	0.00	0.01	0.00	-100.00
9	Philippines	10,100	0	0	0.05	0.00	0.00	0.00
10	Spain	0	2,390	0	0.00	0.01	0.00	-100.00

출처 : GTA (http://www.gtis.com/gta/)

- 미국은 2013년 3,191만 7,641달러에 이르는 인삼류를 수입하였으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 홍콩, 캐나다, 한국, 독일 등이 있음
- 인삼류와 관련해서 미국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2013년 중국으로부터 2,068만 6,852달러의 인삼류를 수입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약 64.81%, 전년 대비 3.41% 상승한 수치임
- 중국을 이어 홍콩이 2위로 2013년 607만 5,291달러 규모의 인삼류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한국은 4위로 미국에서 2013년 기준 133만 3,642달러 규모의 인삼류를 수입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인삼류의 전체 수입액은 2013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3.14% 감소하였으나 큰 상승폭을 보이는 국가도 있는 것으로 밝혀짐

2. 삼(蔘)류 소비동향

- 젊은 층의 인지도 및 구매력이 현저히 낮고 소비의 중심이 40대 이후의 고령층으로 소비가 제한적이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소비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파악됨
 - 인삼 엑기스 제품은 한국산 제품이 주류였다면, 인삼 분말 제품은 중국산의 제품이 다수임
-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대만, 일본에서의 한국산 인삼류 제품의 수출회복이 더디나 미국(3.5% ↑)과 캐나다(9.3% ↑), 베트남(53.9% ↑) 등 2선 시장은 지속적인 수출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일본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제품들의 홍보 시 제품의 제조 지역, 제조 회사와 생산 과정 및 원재료의 품질검수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곁들이는 것이 주요 홍보 방식임
- 미국의 삼과 우리나라 인삼과는 종이 달라서 과거에는 미국인 스스로가 비싼 동양

삼 수요를 대체하는 열등재로 미국삼을 인식했었으나 미국삼은 열을 내리고 한국의 인삼은 열을 올린다는 ‘왜곡된 인식’ 이 널리 퍼지면서 동남아 등 더운나라에서 미국삼이 인기를 끌고 인삼의 주도권마저 잡기 시작함

□ 미국삼은 대규모 재배와 수확 후 껍질 껌 말려 벌크로 수출하면서 생산비를 줄이고 대규모 기업농에 의해 미국삼을 생산, 가공, 유통하고 있어 가격경쟁력도 높아지고 있음

□ 많은 구매자들이 농약성분 또는 중금속 잔존량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유기농 인증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

□ 소매점에서의 주요 구매 고객은 신선한 취향을 선호하는 개인고객이며 신선 화기삼은 건조제품에 비해 보다 많은 풍미와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생각함

□ 보통 뿌리삼 형태보다는 가공된 형태로 상품화 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으며 식음료 제품의 음료로 사용되거나 건강보조식품의 시럽 및 분말, 제형으로 포장되어 유통됨

- 식음료 분야 : 음료 및 제과, 가공식품에서 화기삼의 응용은 주로 농축액 및 농축 분말의 형태로 이들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됨

- 에너지 & 스포츠 음료
- 차
- 냉차
- 주스와 주스 음료
- 영양 파우더와 음료
- 맛 첨가 생수
- 탄산수
- 농축음료 & 혼합음료
- 알콜첨가 음료
- 설탕첨가 과자류

- 건강보조식품 분야 : 농축액 및 농축분말이 원재료의 일부로 타용된 태블릿이나, 농축액, 농축분말의 제품형태로 제조됨

- 식물성/허브 제품

- 남성용
- 비타민, 미네랄
- 여성용
- 젤캡슐형, 정
- 기타 소프트 젤 캡슐, 정, 가루
- 체중 감소
- 농축
- 향산화제
- 과일과 채소 농축

3. 삼(蔘)류 유통동향

□ 미국 내 화기삼 유통경로

－ 야생삼 및 준야생삼

- 유통경로는 매우 전문화되어 있음
- 재배자는 아시아의 고객을 확보한 야생삼 중계인과 거래함
- 거래에 있어서 양보다는 제품이 더 중요함
- 준야생삼 재배자들이 구매중계인의 요구 품질에 맞출 경우 야생삼 만큼의 가격을 보상 받을 수도 있음

－ 숲재배삼

- 재배자들은 아시아 시장의 중계인들과 주로 거래함
- 일부 재배자들은 직접 중소규모의 추출물 제조업체에 판매하거나 해외의 업체에 수출을 함

－ 재배삼

- 유통경로는 잘 짜여 있고 수직 통합됨
- 많은 거대 재배농장들은 대형 추출물 제조업체와 계약을 통해 직접 거래하거나 수직 통합된 공급체인에 속해있음
- 다수의 소규모 재배농장들은 협동조합 등을 구성하여 직접 구매자들과 협상을 진행하기도 함

□ 유통비중

－ 야생삼 및 준야생삼

- 생산량의 90% 이상은 아시아로 수출되며 건조된 뿌리삼으로 수출됨

－ 숲재배삼

- 주로 중소규모의 추출가공업체에서 이용됨
- 가격변동성으로 인해 대형 가공업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편
- 숲재배삼은 준야생삼의 경우처럼 브로커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되기도 함

－ 재배삼

- 전세계적으로 거래되는 화기삼의 약 96% 이상은 재배삼임
- 건조삼 구입고객은 전 세계에 퍼져있고 일부 최종소비자는 건조된 뿌리삼을 구입하지만, 대부분은 대형 제조업체를 통해 추출물 또는 분말제품 형태로 구입함
- 추출물 또는 분말제품은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활용됨

III 미국 통관 정보

1. 관세 및 기타 세금

- 산양삼의 HS CODE는 「1211.20 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 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함)」으로 분류되며 기본 세율은 20%로 조사됨

< 관세율 >

품목번호	기본세율	한·미 FTA 협정세율
1211.20	20%	0%

출처 :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 관세 이외의 세금

- 특정 상품에 부과되는 국내 소비세 및 항만 유지 수수료 등을 세관이 고나련 부처를 대신하여 징수하며, 또한 세관 사용료 등을 부과함. 관세 이외에 세관이 다른 기관을 대신하여 징수하는 세금과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 국내 소비세 : 다음의 수입화물에 대한 국내 소비세는 세관이 국세청 (IRS)을 대신하여 수입 시 징수
 - 맥주
 - 와인 (술 포함)
 - 발효주
 - 에탄올
 - 주류
 - 향기 물질을 함유하는 음료
 - 담배 제품
- 상업화물 세관 사용료 (Custom User Fees) : 아래 면제화물을 제외한 모든 화물 (관세 면세 제품 포함)에 대하여 세관의 요금이 징수됨
- 수수료 면제화물

- 미국 관세율 표 제 98류 감면세 품목 (일부 예외 있음)
 - 미국 속령 (괌, 미국령 사모아, 버진 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 상품
 - 후발 개발 도상국 상품
 - 카리브해 경제 회복 (CBI) 대상 국가 상품
 - 이스라엘과 자유 무역 협정 대상 제품
- 현행 수수료율 (1995년 개정) : 수입 신고 금액(FOB 가격)의 0.21%(최저 25 달러 ~ 최고 485 달러)이나, NAFTA의 발효로 캐나다 및 멕시코 제품은 없으며, 매뉴얼(비 전산화) 신고의 경우 6 달러가 추가됨
- 항만 유지 수수료
- 수자원 개발법(1986년 Public Law 99 - 662)에 규정된 바와 같이, 미국의 항만을 이용하는 자(화주)에게 화물(수출입 및 일부 국내화물)의 0.125%(1990년까지는 0.04%)에 해당하는 從價稅을 부과하는 것으로, 1987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수출·수입·국내화물 등에 관계없이 징수됨
- 부가가치세 : 미국에서 2012년부터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연방 부가가치세(VAT)가 없으나 대신 판매 세금이 대부분임
- 일반 비즈니스 과세의 형태로 “단일 사업 세금”(SBT)으로 알려진 VAT의 형태를 사용하며 이 VAT를 사용하는 미국이 유일한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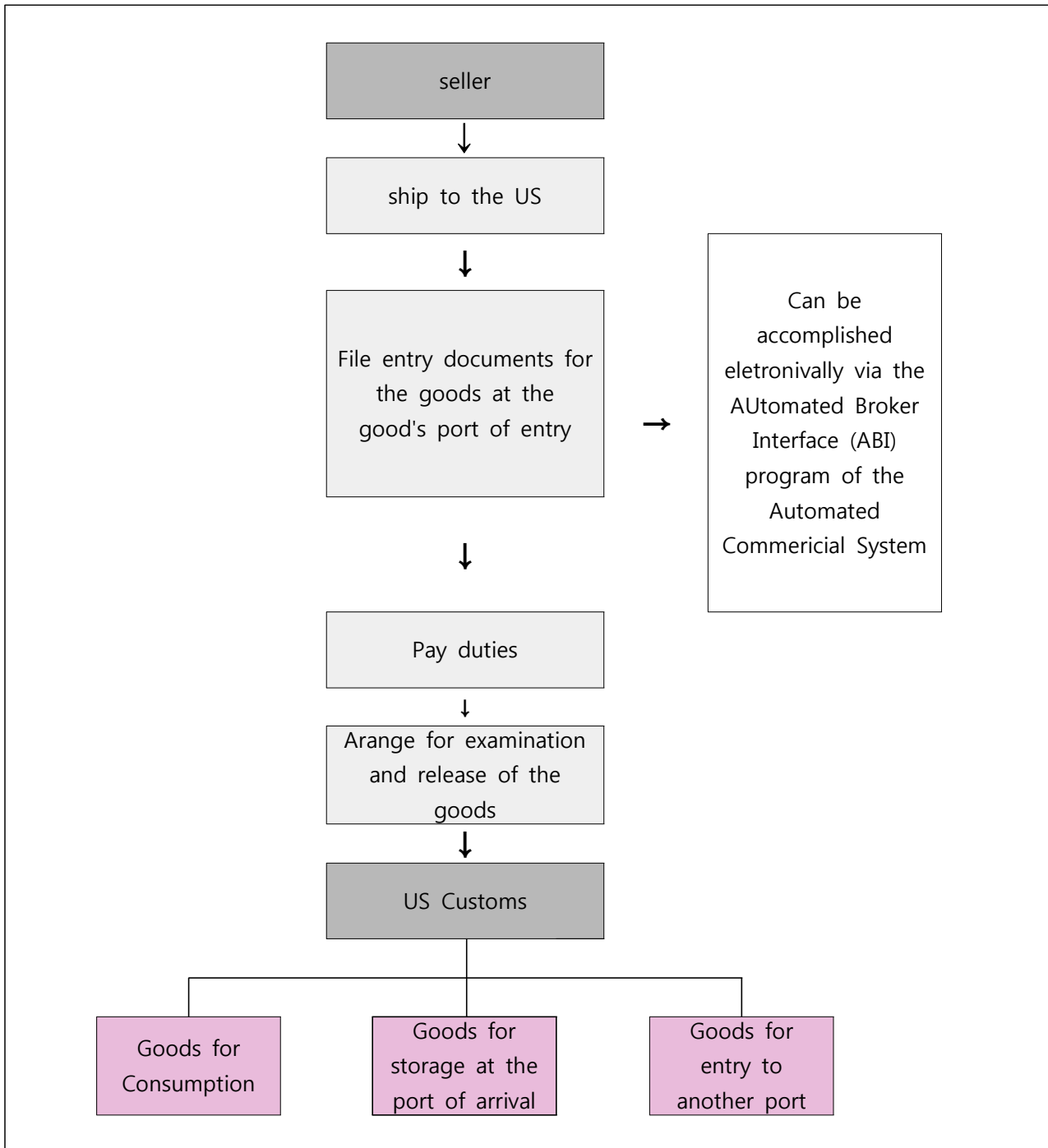
2. 식품 통관 시 유의사항

- 수입신고 대상금액: \$2,500이상 (그 이하는 목록통관), 단 FDA/OGA 수입제한품목은 \$250이상에 한해 수입신고 필요함
- 식품·과자류 품목에서는 비스킷, 베이커리, 조제커피, 차, 조제과실, 건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혼합조미료가 목록통관 배제대상임

3. 통관절차

□ 미국 수입통관 절차

< 통관절차 flow chart >



출처 : KATI (<http://www.kati.net/>)

- 적하목록 (Manifest)를 제출 → Entry를 제출 → 물품을 반출 → 개산한 관세와 함께 Entry Summary를 제출하여 심사 → 관세를 정산

- 운송회사는 세관 입항신고 시 Manifest를 함께 제출
- 세관은 Manifest 기재내용과 일치하게 물품이 장치, 보세운송 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자가 제출한 Entry 기재내용의 상호 일치 여부를 확인
- 물품 도착 후 수입자는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 수입신고 (Entry 제출)
- 수입자는 반출 후 10 영업일 이내에 개산한 관세와 함께 Entry Summary를 세관에 제출 (상품 세 번 분류, 과세가격, 관세 상정은 일단 모두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 세관은 Entry Summary를 심사하여 세액확정, 통계작성, 기타 쿼터 등의 제반 규제 법령등과 일치 여부를 심사
- 수입업자가 개산하여 납부한 관세액과 심사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을 비교, 과잉 납부액을 환급하고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로서 Entry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
- 미국은 GATT (WTO의 전신) 산하 관세협력위원회가 채택한 국제상품분류 제도 (HS Code)에 의거, 미국의 실정에 맞게 세분한 HTSUS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S)를 운용, 8단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총 9,121개에 달하는 세부 품목별로 관세율을 정해 둔 방대한 관세율표를 운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상품분류가 반드시 일반통념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함
- 미국은 개도국에 대해 일반특혜관세제도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를 운영하여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OECD에 가입할 정도로 성장한 한국은 해당이 없음. 다만, 제 3국에 투자 진출하여 미국의 원산지규정에 의해 해당 국가의 제품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GSP가 유용한 수단이 될 것임

□ 「FDA」의 통관검사

- 「FDA의 Office of Regulatory Affair(ORA)」에서 작성한 내부 매뉴얼 (Regulatory Procedure Manual)에 따르면, 「FDA」의 통관검사는 미국 세관의 ACS(Automated Commercial System)와 「FDA」의 OASIS(Operational and Administrative System for Import Support)에 입력되어 있는 수입화물 정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짐

- 미국 세관이 「FDA」로 통보하는 수입물품(식품,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등) 정보는 FD 0, FD 1, FD 2 등 3개의 코드로 분류되며, FD 0 코드는 「FDA」의 별도 검토(Review)없이 통관이 가능한 품목, FD 1 코드는 FDA의 관할 여부가 불분명하여 「FDA」의 검토(Review)가 필요한 품목, FD 2 코드는 「FDA」에 상세 정보 제공이 필요한 품목을 의미함
- FD 2 코드로 분류될 경우, 세관은 FDA 제품코드, 해외 제조업체 MID 코드, 해외 운송업체 MID코드, 원산지 세부정보 등을 제공해야 함

4. 통관 증빙서류

- 수출업자는 입항 신고 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주관하는 무역자동화시스템(Automated Commercial System)에 정보를 기입하여야 하고 이 정보는 미국식약청의 Operational and Administrative System for Import Support와 함께 나중에 검역 시 사용됨
- 무역자동화시스템(Automated Commercial System)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기입되어야 함
 - CBP entry information (CBP 입항정보)
 - entry number (입항 번호)
 - entry date (입항 날짜)
 - importer identification (수입업자 신원확인서)
 - port of entry (통관항)
 - vessel/voyage information (적재 정보)
 - filer identification (담당자 신원확인서)
 - harmonized Tariff Schedule (HTS) code for product (상품 HTS 코드)
 - information on foreign shipper (외국 운송업자 신원정보)
 - country of origin (원산지)
 - quantity (수량)
 - value (가격)

- Operatonal and Administrative System for Import Support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추가적으로 기입되어야 함

- FDA product code (FDA 상품 코드)
- MID code of the foreign manufacturer (해외 제조업자의 MID코드)
- MID information of the foreign shipper, including city and country (도시와 국가를 포함한 해외 운송업자의 MID 정보)
- Country of origin (원산지)

5. 통관 거부사례

1) 홍삼 (Korean Red Ginseng Pouch) 통관 거부

구분	내용	
통관거부일자	2013년 09월 06일	
담당 검역소	LOS-DO	
제품 코드	54FYY12	
통관 거부 사유	No English	- 403(f), 801(a)(3); MISBRANDING : 21 CFR 101.15(c)에 따른 라벨링 영어 미기재
	No Process	- 402(a)(4) 801(a)(3); ADULTERATION : 제조업체가 21 CFR 108.25(c)(2) 나 108.35(c)(2)에서 요구하는 계획된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음

출처 : KATI (www.kati.net)

2) 홍삼액 (Ginseng Extract) 통관 거부

구분	내용	
통관거부일자	2013년 07월 01일	
담당 검역소	SWI-DO	
제품 코드	25LYY99	
통관 거부 사유	LABELING	- Section 4(a); 801(a)(3) Misbranding : 이 제품은 배치, 형태 그리고/또는 제품설명서가 FPLA를 위반한 것으로 보임
	LACKS FIRM	- 403(a)(1), 801(a)(3); MISBRANDING : 제품 포장 안 식품 라벨에 이름과 제조사의 위치, 유통업체, 포장 업체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
	LIST INGRE	- 403(i)(2), 801(a)(3); MISBRANDING : 두 가지 이상의 식재료로 만들어진 식품으로, 라벨에는 각각의 재료에 대한 공통적인 명칭을 나열하지 않았음
	NUTRIT LBL	- 403(q); 801(a)(3); Misbranding : 이 제품은 라벨에 영양에 관한 정보가 허위, 과장된 것으로 보임

출처 : KATI (www.kati.net)

- 관세청산, 통관거절 및 반화요구 등과 같이 세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할 수 있으나 청산일 또는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음

면 청산 또는 결정은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미국 정부, 법원, 수입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구속함

- 세관의 법률 또는 사실판단에 대한 착오는 모두 불복사유가 될 수 있으며 통관 시 자신이 예치한 금액대로 세관이 청산을 하는 경우에도 불복할 수 있으나 단, 관세청본부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특정한 경우로 제한됨
- 통관거절에 대한 불복의 경우, 세관은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동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불복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청산이나 기타 세관 결정과 관련한 불복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함

< 통관거부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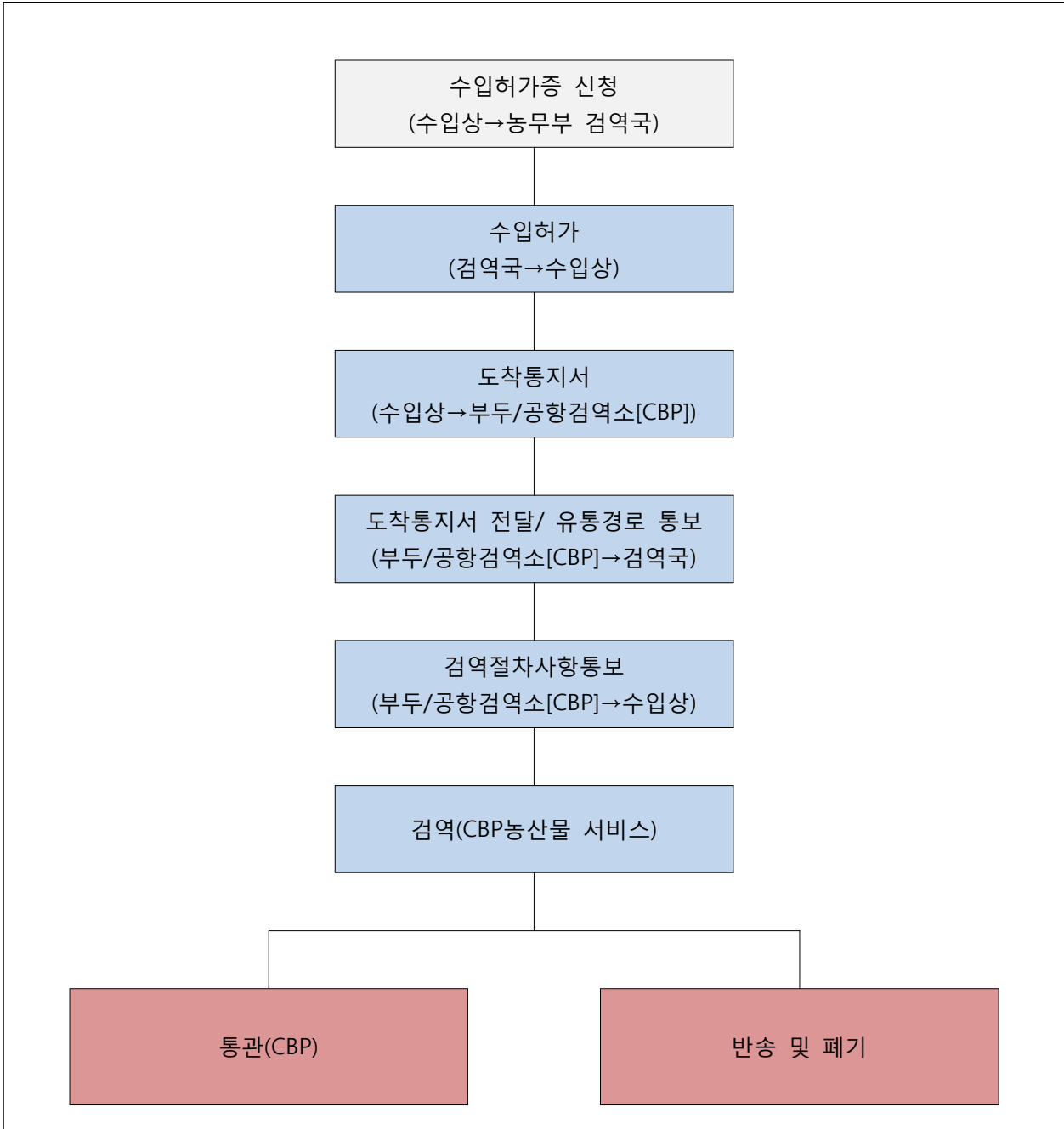
위반 코드명	통관거부 사유	주요 해당 품목군
False	제품 라벨이나 포장에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가 눈에 띄게 표시되어 있음	식품, 의료기기
Filthy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관련 제품에서 오물이 보이고 부패한 물질 또는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함	식품
Health C	해당 제품이 허가받지 않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고, 건강효과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식품
Labeling	제품의 라벨 위치, 정보 제공 형식과 내용이 '공정포장-라벨링 법규'(FPLA: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를 위반함	식품, 화장품
Lacks Firm	제품 라벨에 제조업체, 포장업체, 유통업체의 이름과 주소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음	식품, 의료기기, 의약품
Lacks N/C	제품 라벨에 내용물의 무게, 개수 등 수량 파악이 가능한 정보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음	식품, 의료기기, 의약품
List Ingre	여러 가지 성분(Ingredient)으로 이루어진 제품의 라벨에 각 성분의 이름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음	식품
Needs FCE	21 CFR 108.25 (c)(1) 또는 108.35 (c)(1)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저산(低酸) 통조림이나 산화 음식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	식품
No English	영어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음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의약품
No Process	21 CFR 108.25 (c)(2) 또는 108.35 (c)(2)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제조공정 정보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음 (저산(低酸) 통조림이나 산화 음식 제조업체에 해당)	식품
Nutrit LBL	제품 라벨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영양소 정보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음	식품
Salmonella	인체에 해로운 살모넬라균을 함유하고 있음	식품
Unsafe Col	안전하지 않은 색소 첨가제(color additive)를 함유하고 있음	식품, 화장품

출처 : FDA (<http://www.fda.gov/>)

III 미국 검역 정보

□ 식품 검역 절차

< 식품 검역 절차 >



출처 : KATI (<http://www.kati.net/>)

- 입항신고가 접수된 뒤, FDA는 샘플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로 할 시, 담당자, 수탁업자, 수입업자에게 공지(Notice of Sampling)를 내림

□ 샘플링 요구를 받았을 시에는 관할 구역이나 본사의 검사연구실로 배송해야 하며 샘플을 포함한 박스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기입되어야 함

- 기입되어야 하는 정보

- 관할, 본사의 검사연구실 도시, 주 이름, 단위 상징
- 날짜
- 수입관할지역 정보
- 샘플 번호
- 판매상 이름
- 상품 정보
- 판매상 주소
- 샘플링 이유
- 담당자 이름

□ 한국 수출 검역

- 식물 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식물 등이 수입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식물방역관에게 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 신청방법

- 인터넷
- 우편
- 모사전송(FAX)
- 방문접수
- 전화

- 검사일자 및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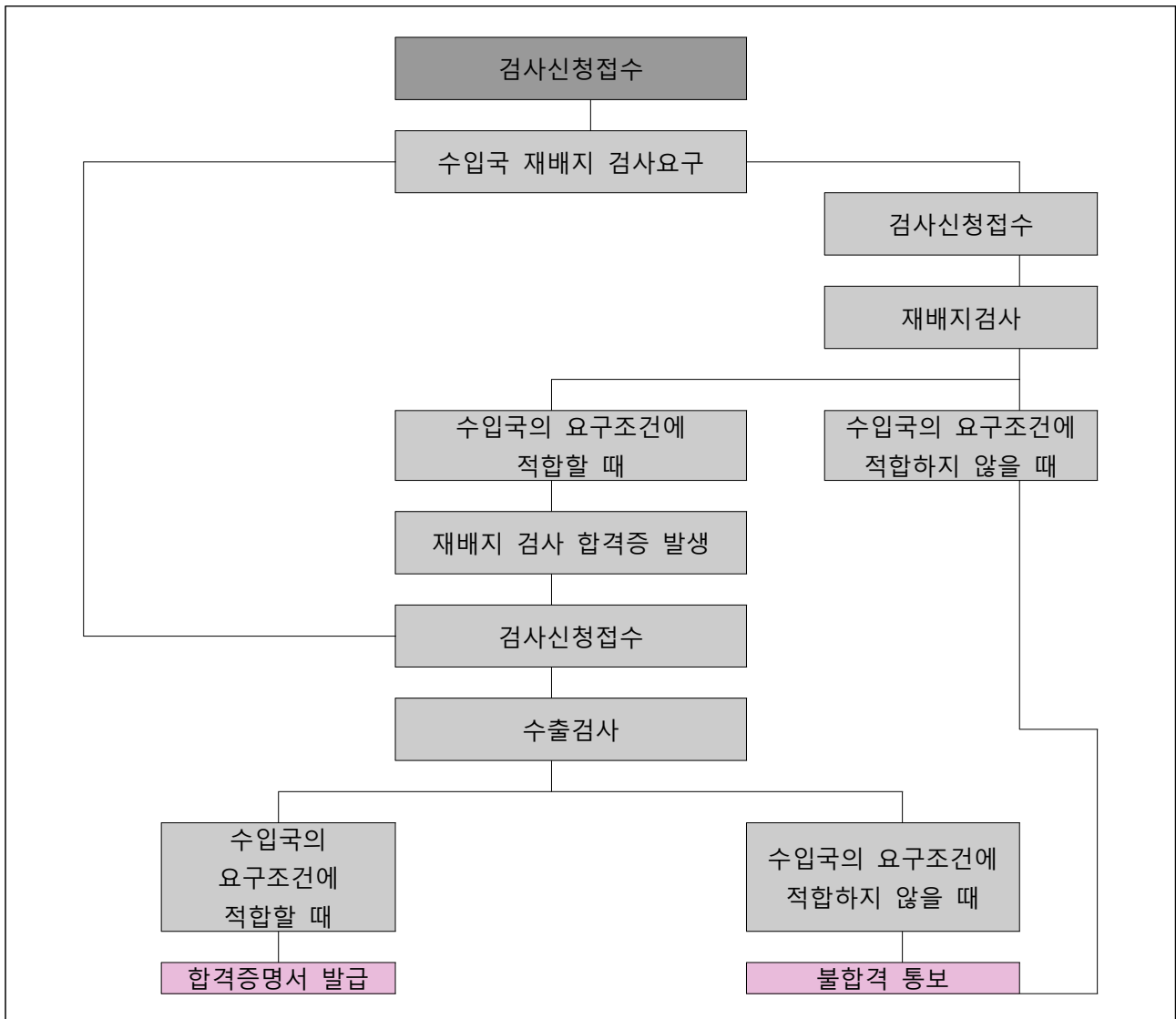
- 검사인력 가동이 가능하고 검사장소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수출자가 원하는 일시, 장소에서 검사 실시

- 검사합격증 발급

- 검사결과 수입국의 요구조건에 맞을 경우, 검사합격증 발급

- 수출식품 검역절차

< 수출식품 검역 절차 >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www.qia.go.kr/>)

IV 미국 라벨링 정보

□ 기본 표기사항

- 식품의 명칭은 통상적인 명칭을 사용해 표기하며 포장용기의 주표시에 표기해야하고 활자의 크기는 라벨에서 사용된 가장 큰 활자의 절반 크기이상이어야 함
- 순중량의 표시는 주요면의 하단 30% 위치에 표시하고 미국단위와 미터단위로 함께 표시해야 함
- 제조사, 포장자, 유통자의 명칭과 주소는 성분 표시면과 같은 면에 기재해야 하며 예외가 없는 한 완전한 주소를 표시해야 함
- 성분표시는 라벨의 주요 표시면, 측면 혹은 후면의 정보표시면에 표기할 수 있으나 제조사, 포장자 혹은 유통자와 같은 면에 표시해야 함
- 성분의 목록순서는 중량이 무거운 것에서 가벼운 것의 순으로 하고 통상명칭으로 기재해야 하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성분도 반드시 표시해야만 함
- 특히 영양성분 표시(Nutrition Fact)는 검사를 통해 1인분을 기준으로 영양소가 정확히 언급되어야 하며 일일 섭취량 표시가 필수적임
- 식품의 명칭
 - 식품의 명칭은 「statement of identity」로 표시되어야 하고 표시 원칙은 영문으로 하여야 하며, 외국어의 병기도 가능함
 - 사용명칭은 쉽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하고, 식품형상의 표현은 인식하기가 용이해야 함
 - 반드시 주표시면에 표기해야 하며, 표시면의 인쇄 중 가장 큰 것의 1/2 이상의 크기여야 함
 - 식품이 일반적·통상적인 명칭을 갖는 경우 이를 식품명으로 사용하며, 일반적·통상적 명칭이 없을 경우에는 그 식품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제품을 잘못 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포장된 식품이 액체가 아닌 경우 ‘가늘게 썰어진 것인지(sliced)’, ‘썰지 않은 것인지(unslice)’, ‘반으로 잘라진 것인지(halves)’ 등의 식품형태를 명시
 - 어떤 신제품이 기존에 있던 식품과 유사하며 기존 식품의 대체제로 사용될 때 만약 그 신제품이 기존의 것보다 필수 비타민·무기질·단백질 함량이 낮다면, 신제품에는

‘모방(imitation)’이라는 표시를 해야 하며, 식품명과 같은 글자 크기와 선명도로 표기해야 함

- 과일이나 채소의 그림, 맛이나 외관, 라벨표기 등으로 소비자가 주스를 함유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음료는 주스의 함량을 %로 표시해야하나 향미를 위해 소량의 주스가 함유된 음료에는 주스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됨
- 100% 주스로 만들어진 음료는 ‘주스’라고 표시할 수 있으나, 100% 미만으로 희석된 음료는 음료, 드링크, 칵테일의 의미를 갖도록 표시해야 함
- 혼합과일이나 채소주스의 명칭을 표시할 때는 향미목적으로 사용되어 표시가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주스부터 부피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표시해야 함

- 정미중량의 표시

- 식품의 중량은 용기 또는 포장 등의 중량을 제외한 정미중량, 즉 실중량을 기재해야하며 용기안의 식품에 부가된 물이나 다른 액체는 실중량 표시에 포함됨
- 충전매개체가 포함된 경우 충전매개체를 제거한 무게가 실중량이며, 내용물의 중량은 미터법(grams, kilograms, milliliters, liters)과 미국 통상단위법(ounce, pounds, fluid ounces)에 따라 두 가지로 표기해야 함

- 원재료명의 표기

- 원재료의 표기는 식품에 사용한 스파이스, 향료, 착색료 및 첨가물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표시하는 원재료명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명칭으로 표시하고,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집합적 명칭을 표시해서는 안 됨
- 원재료명 목록(Ingredient list)이란 식품에 사용된 각각의 원재료를 주된 것부터 내림차순(중량이 많은 것부터 적은 순서로 쓰는 방식)으로 나열하는 것을 말함
- 원재료명 목록은 식품명, 제조자, 포장업자, 유통업자의 주소 등이 있는 면과 같은 면에 있어야 하고, 영양표시, 제조자, 포장업자, 유통업자 주소의 앞이나 뒤에 표시할 수 없음
- 허가된 방부제를 식품에 첨가할 경우 원재료명에 그 방부제의 일반적 또는 통상적 명칭을 기재해야 함
- 파프리카, 튜메린, 샤프론 등 색소로도 사용되는 향신료는 ‘파프리카’와 같이 실제 명칭을 기재하거나, ‘향신료와 색소’라는 용어로 표시함
- 인공색소는 공인된 색소의 경우 약어 또는 특정의 명칭을 사용하고, 공인되지 않은 색소의 경우 ‘인공색소(artificial color)’라고 표시하거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명칭을 사용

- 제조업자·포장업자·유통업자의 표시

- 식품제조업자·유통업자의 명칭, 사업장의 위치를 명확히 하여 정보표시면에 표시해야하며, 이 경우 수입식품은 미국 세관의 원산지 기재에 관한 사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기해야 함

– 일자 표기

- 미국 연방규제에는 유효기간 등의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음. 다만, 유아용식품에는 ‘Expiration date’의 표시를 해야 함

– 영양정보 표시

- 미국의 식품표시제도는 해당식품의 영양에 관한 표시(New Nutrition Label)를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포장당 1회분량, 1회 분량당 영양소 함유량 등을 표시해야 하나, 식사보조용 식품, 의료용 식품, 소매되기 전 가공이나 포장을 위해 큰 포장 단위로 운송되는 식품, 주문 가공생선, 상자단위의 계란, 판매용이 아닌 소비자를 위해 증정용으로 만든 식품 등은 영양표시 면제대상으로 영양표시를 하지 않아도 됨
- 표시방법과 관련, 영양정보는 주 표시면이나 정보표시 면에도 표시할 수 있고, 주 표시면과 정보 표시면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면에 표시할 수 있음
- 아침식사용 씨리얼이나 날개로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과 같이 한 포장 안에 여러 개의 소포장이 되어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조자는 각각의 소포장에 일일이 영양정보 표시를 하거나 한 개의 포장에 통합적으로 표시할 수 있음
- 전이지방과 알레르기유발 식품에 대해서는 성분표시가 2006년부터 강화되어, 식품공급자는 영양정보 표시란에 전이지방 함량을 표시하고 별도로 콜레스테롤 함량을 표시해야 함
- 전체 지방함량에서 포화지방을 표시하고 별도로 콜레스테롤 함량을 표시해야 하나 식품에서 전체 지방함량이 0.5g 이하인 경우 전이지방 함량을 표시할 필요가 없음
- 알레르기 유발식품에서 추출된 알레르기 항원 단백질을 함유한 식품원료로 제조된 식품 일 경우 식품라벨의 성분 표시란에 알레르기 유발식품의 존재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음
- 표시는 식품명을 적은 후 괄호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일반명을 기재하거나, 성분리스트를 적은 후 「contai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알레르기 성분을 표기해야 함
- 신선농산물도 미국의 식품표시제도의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며, 2개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일반 식품의 경우 원재료명을 표기해야 하나 신선농산물은 그 자체가 하나의 성분을 이루기 때문에 원재료명을 표시하지 않아도 됨
- 영양분석표 또한 포장표기를 할 필요가 없으나 주요 식품의 경우 구매시점에서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진열대별로 표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미국산이나 수입산에 관계없이 「농산물마케팅국(AMS)」이 지정한 신선농산물 20여개

품목은 AMS의 등급규정에 따라 등급을 표기해야 함

- 등급표기는 식품표시제도를 주관하는 FDA가 아닌 농산물마케팅국(AMS)에서 권장하며, 지정품목 외에는 자발적으로 표시하면 됨
-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라벨링 규정은 1997년 제정된 DSHEA(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미국에서 유통되는 인삼제품들은 대부분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 참고자료

- GTA : <http://www.gtis.com/gta/>
- 미국 관세청 : www.customs.gov
- 식약처 : www.mfds.go.kr/
- 관세청 : www.customs.go.kr/
- 세계 HS 정보시스템 : <http://www.customs.go.kr/>
- H mart : <http://www.hmart.com/>
- LA TIENDA : <http://www.tienda.com/>